

제 호

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

1. 명 칭:

2. 대표자:

3. 소재지:

「경제교육지원법」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재정경제부장관

직인